Department of Finance

재산 가치 통지서
2026~27 과세 연도
(이것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5일

소유자(들)

부동산 주소

자치구: __ **블록:** __ **필지:** __

세금 등급: __ **건물 등급:** __ **유닛:** __

재산 가치 통지서(NOPV) 한눈에 보기

2026~27년 시장 가치: $_____

2026~27년 평가액: $_____

귀하의 재산세 면제 내역: _____

2026~27년 재산세 추정치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귀하의 연간 재산 가치 통지서(NOPV)입니다. **청구서가 아니므로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통지서는 다음을 안내합니다.

- 2026~27과세 연도의 재산 평가액을 알려드리고,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 2026~27 과세 연도의 재산세 추정치를 입력하세요.

이 통지서 사본을 기록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ww.nyc.gov/nopv 에서 NOPV 및 재산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6~27년 재산세 추정치

시의회에서 새로운 세율을 확정할 때까지는 2026~27 과세 연도의 재산세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2025~26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및 공제를 포함하여 여러 요인이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표는 귀하의 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액에 현재 세율 _____%를 곱하여 납부하게 될 예상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 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2026~27 세율과 귀하의 감면 및 공제액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	과세 표준액		세율		재산세
2026~27	$_____	x	._____	=	$_____

주요 날짜

2026년 3월 2일
평가액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일입니다.
(2 및 4등급 속성)

2026년 3월 16일
시장 가치 검토 신청 마감일입니다.
(1 및 2등급 속성)

세금 감면(면제) 신청 마감일입니다.

2026년 4월 1일
시장 가치 검토 신청 마감일입니다.
(4등급 속성)

2026년 7월 1일
과세 연도가 시작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nyc.gov/nopv

재산세 산정 방식

재산세는 다양한 금액과 계산을 고려한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재산 가치 평가 및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c.gov/nopv에서 확인하세요.

이러한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할 조치	
Department of Finance에 **시장 가치 이의 제기**	New York City Tax Commission에 **평가액 이의 제기**
Department of Finance가 귀하의 시장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Request for Review”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www.nyc.gov/nopv에서 확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시장 가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유효 시장 가치보다 낮은 시장 가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출 마감일:** 세금 1 및 2등급 속성: 2026년 3월 16일 세금 4등급 속성: 2026년 4월 1일	귀하는 Department of Finance 와는 별도의 독립 기관인 New York City Tax Commission 에 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Tax Commission은 귀하의 재산 평가액을 인하하고, 세금 등급을 변경하며, 재산세 면제 내역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Tax Commission은 귀하의 시장 가치, 부동산 설명 또는 건물 등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Tax Commission이의 제기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www.nyc.gov/taxcommission 을 방문하세요. 재무국 Department of Finance 비즈니스 센터위치: www.nyc.gov/nopv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1로 문의하세요. **제출 마감일:** 세금 1등급 속성: 2026년 3월 16일 기타 모든 속성: 2026년 3월 2일

<u>검토 사항</u>: 귀하의 재산 세부 정보

Department of Finance에는 귀하의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검토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www.nyc.gov/nopv 에서 제공되는 “Request to Update” 양식을 제출하시거나 311로 전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들): _____ **건물 등급:** _____

주요 용도지역	_____	**필지 전면**	_____	**필지 깊이**	_____
필지 면적(제곱피트)	_____	**필지 형태**	_____	**필지 유형**	_____
인접성	_____	**건물 전면**	_____	**건물 깊이**	_____
건물 수	_____	**스타일**	_____	**건축 연도**	_____
외관 상태	_____	**완공 면적 (제곱피트)**	_____	**미완공 면적 (제곱피트)**	_____
상업용 유닛	_____	**상업용 면적 (제곱피트)**	_____	**주거용 유닛**	_____
차고 유형	_____	**차고 면적 (제곱피트)**	_____	**지하실 등급**	_____
지하실 면적 (제곱피트)	_____	**지하실 유형**	_____	**건축 구조 유형**	_____
외벽	_____	**층수**	_____		

변경된 사항: 2025~26년과 2026-27년 과세 연도 비교

	현재 연도(2025~26)	내년(2026~27년)	변경 사항
시장 가치	$_____	$_____	+/- $_____
평가 비율	___%	___%	- -
평가액	$_____	$_____	+/- $_____
유효 시장 가치	- -	$_____	- -
감면(면제) 금액	$_____	$_____	+/- $_____
과세 표준액	$_____	$_____	+/- $_____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면제)

뉴욕시는 고령자, 재향군인, 성직자, 장애인 등에게 감면(면제)으로 알려진 재산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면제를 통해 유치권 매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매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봉된 시트를 참조하세요.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면제)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16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yc.gov/nopv를 방문하거나 311로 문의하세요.

뉴욕주는 많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STAR 혜택과 고령자를 위한 강화된 STAR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5년 3월 15일 이후에 뉴욕주에 STAR 또는 강화된 STAR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제는 이 통지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ax.ny.gov/star에서 확인하세요.

협동조합(CO-OP)/콘도 재산세 감면

협동조합(co-op) 및 콘도미니엄 유닛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유닛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속해야 하며, 소유자의 주거주지여야 합니다.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신청 방법, 주거주지 확인 요건, 갱신 절차 포함)는 www.nyc.gov/nop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Department of Finance www.nyc.gov/contactcoopabat 으로 문의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세요.

도움을 받는 방법

DEPARTMENT OF FINANCE에 문의

이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에 다음과 같이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www.nyc.gov/nopv

전화: 311로 전화하세요. (뉴욕시 외 지역 또는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12-639-9675로 전화하세요.)

우편: NYC Department of Finance
Correspondence Unit
1 Centre St, 22nd Fl
New York, NY 10007

DEPARTMENT OF FINANCE 홍보 행사

재산 가치 통지서에 대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등록 방법 및 최신 소식 수신 방법 포함)는 www.nyc.gov/nopv를 방문하시거나 311로 전화해 주십시오. 행사에 NOPV를 지참하십시오.

모든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하여 오후 8시에 종료됩니다.	
2월 3일 Bronx	Bronx Business Center 3030 Third Avenue
2월 5일 Brooklyn	Brooklyn Borough Hall 209 Joralemon Street
2월 17일 Manhattan	Manhattan Business Center 66 John Street
2월 19일 Queens	Queens Borough Hall 120-55 Queens Boulevard
2월 24일 Staten Island	Staten Island JCC 1466 Manor Road

납세자 권익 옹호 사무소

Department of Finance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시는 경우, 납세자 권익 옹호 사무소(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 www.nyc.gov/taxpayeradvocate를 방문하여 DOF-911 양식 “Request for Help from the 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 을 작성하십시오.

전화: 311로 전화하세요. (뉴욕시 외 지역 또는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12-639-9675로 전화하세요.)
우편: NYC 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 375 Pearl Street, 26th Floor, New York, NY 10038

장애로 인해 Department of Finance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신청·이용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www.nyc.gov/contactdofeeo를 통해 장애 서비스 담당자 Disability Service Facilitator 에게 연락하시거나 311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